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 동향

Trends in Revision of the Child and Youth Support Law in Germany

홍문기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주무관)
Hong, Moonki (County of Wanju)

1. 들어가며

2021년 6월 10일,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KJHG: Kinder- und Jugendhilfegesetz)이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 목적은 아동·청소년, 부모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개인적·사회적 발달을 위해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내재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전제로 한다(Bundesrat, 2021, p. 31).

지난 5년간 독일 사회는 청소년-가족장관 회의(Jugend- und Familienministerkonferenz), 13~15차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 und Jugendbericht), 연방 아동보호법 평가 보고서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제19대 독일의회(19. Legislaturperiode,

2017~2021)는 아동·청소년,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지원 강화, 관련 기관 간 원활한 협력 방안, 가정 밖 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 확대 등 법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연정합의서(Koalitionsvertrag)에 밝히고 있다.

연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쟁점과 대안: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Mitreden-Mitgestalten: Die Zukunft der Kinder- und Jugendhilfe)”을 주제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민간 단체 종사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Arbeitsgruppe)은 빈곤과 심리적·정신적 장애, 가정 외 보호 체계 청(소)년,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가 있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0, p. 24).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기관 간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둘째, 보호시설과 위탁가정에서 거주하거나 시설보호에서 종료되는 자립 준비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생애 전환기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통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일원화하였다. 어린이집 통합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력 등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통합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전담인력)를 청소년청에 배치하여 지원하고, 2028년부터 모든 아동·청소년기관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넷째, 옴부즈퍼슨사무소를 설치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 부모가 행정이나 서비스 기관과 갈등을 겪을 때 사무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1년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개정 사항

가. 관련 기관의 책임성 강화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확립

이번 개정 사항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의사와 치과의사 직업군을 확대하였고(§ 4 KKG), 아동학대 신고자는 필요할 경우 아동의 위험 사정 평가에 참여하거나 보호 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8a Abs.1 Satz 2, § 4 Abs. 4 KKG). 관련 기관 간 정보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은 아동복지 위험을 인지할 경우 청소년청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5 KKG), 청소년청은 가정법원이 요청하면 아동·청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50 Abs. 2).

나. 보호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허가

요건 강화

2016년 2월 23일 청소년-가족장관회의 결의안은 해외 아동이 독일에서 거주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한다(Jugend- und Familienministerkonferenz [JFMK], 2016, p. 15). 결의안을 근거로 2018년 “쟁점과 대안: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 토론회에서 기관 운영 허가 절차에 따른 규

정과 해외 아동 체류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보호시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해외 아동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부모 양육의 책임성은 없으나, 아동·청소년은 기관 종사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의존관계와 힘의 불균형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BMFSFJ, 2020, p. 24).

개정 사항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불시에 실시하고(§ 46 SGB VIII), 감독기관이 요청하면 시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7 SGB VIII). 특히 시설의 운영 허가 요건에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아동 표현과 참여를 위한 적절한 절차 운영, 내·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였다(§ 45 Abs. 4 SGB VIII). 부모가 없는 해외 아동의 독일 체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38 SGB VIII).

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을 보호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아동·청

소년의 담당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지원 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후 담당기관이 적절하게 협력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자립준비청년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1, 41a SGB VIII).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 비용 분담금은 소득의 최대 75%에서 25%로 줄이고, 자산을 통한 비용 징수 내용은 삭제하였다(§ 94 SGB VIII).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청은 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탁아동·청소년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이 위탁부모에 의해 적절히 보장되는지 가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37b SGB VIII).

라.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일 지원 체계

“쟁점과 대안: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국가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아동·청소년지원법」상

는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원칙과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통합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서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의 변화를 규정하였다(Bundesrat, 2021, p. 38).

독일 의회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어린이집에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의 통합 돌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22a Abs. 4 SGB VIII), 진로 활동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접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1 Abs. 1 Satz 2 SGB VIII). 특히 담당기관 변경 시 전후 서비스 기관 간 협력(§ 36b SGB VIII), 지원 사항에 대한 기관 간 협력(§ 36 Abs. 3 SGB VIII), 이해 가능한 형태의 상담(§ 8 Abs. 4, § 10 Abs. 1, § 36 Abs. 1 Satz 2, § 42 Abs. 3 SGB VIII) 등이 포함되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청소년청에 통합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027년 1월 1일까지 연방법에 지원 대상과 유형, 비용 등을 규정한다(§ 10b SGB VIII). 2028년부터 모든 아동·청소년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도 서

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Deutscher Bundestag, 2021, p. 5).

마. 아동·청소년, 청년, 부모의 참여 강화

양육권자의 참여로 상담 목적이 저해될 경우에는 부모나 양육권자 없이 아동·청소년만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8 Abs. 3 SGB VIII). 특히 아동·청소년, 청년, 부모 등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원하는 방법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한 정책과 다른 서비스, 정책의 효과성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10a SGB VIII). 일시보호 시 아동과 청소년, 부모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42 Abs. 2 und 3 SGB VIII), 아동·청소년,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관련 협회 등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4a SGB VIII).

주목할 만한 점은 옴부즈퍼슨사무소 신설 규정을 추가하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언이나 중재, 갈등을 옴부즈퍼슨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사무소는 아동과 청소년, 가족의 요구를 대변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시를 받지 않는다(§ 9a SGB VIII).

3. 나가며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다. 아동·청소년, 청년, 부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삶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해 전환 단계마다 삶의 여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둘째,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단계마다 의무적인 참여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옴부즈퍼슨사무소의 설치하는 정책이나 서비스 기관과 같등하는 아동·청소년,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관련 단체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공공과 당사자 간 힘의 구조를 균형 있게 명시하고 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권의 다양한 노력과 합의 과정이다. 독일 의회는 연정합의서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더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합의하였다. 정치권의 연정합의는 연방정부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운영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독일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를 '아동·청소년 지원'이라는 하나의 통합적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했거나 직면하게 될 복잡·다양한 문제를 독일의 경험에서 찾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2020). *Abschlussbericht. Mitreden-Mitgestalten: Die Zukunft der Kinder- und Jugendhilfe*. Retrieved from <https://www.mitreden-mitgestalten.de/sites/default/files/downloads/abschlussbericht-mitreden-mitgestalten-die-zukunft-der-kinder-und-jugendhilfe-data.pdf> 2022. 11. 6.
- Bundesrat. (2021). *Drucksache 5/21*. Retrieved from <https://dip.bundestag.de/vorgang/.../272013> 2022. 11. 6.
- CDU, CSU, SPD. (2018). *Ein neuer Aufbruch fuer Europa. Eine neue Dynamik fuer Deutschland. Ein neuer Zusammenhalt fuer unser Land*. Koalitionsvertrag zwischen CDU, CSU und SPD. 19. Legislaturperiode. Retrieved from https://archiv.cdu.de/system/tdf/media/dokumente/koalitionsvertrag_2018.pdf?file=1 2022. 11. 6.
- Deutscher Bundestag. (2021). *Drucksache 19/28870*. 19. Wahlperiode. Retrieved from <https://dip.bundestag.de/vorgang/.../272013> 2022. 11. 6.
- Jugend- und Familienministerkonferenz[JFMK]. (2016). *Umlaufbeschluss 1/2016 vom 23.02.2016*. Retrieved from <https://www.landtag.ltsh.de/infothek/wahl18/umdrucke/5700/umdruck-18-5775.pdf> 2022. 11. 6.